제321회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2월13일(금)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제안설명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북 청원의 변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 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법안 심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가 종료된 직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표결에 임하는 의원들이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안 등의 경우에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둔 소위원회가 심사를 종료한 후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통상적인 의결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산안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 등의 보고서 제출 후 24시간의 여유를 두어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등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수정내용을 숙지한 후 전문적이고 진지한 토론 후에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법률안 및 예산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서울 도봉갑 출신 인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행 예산안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시행하는 이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처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할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가족부와 외교부에 대한 추가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29인의 국회의원들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부처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

원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군현입니다.

오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법률안의 발의배경 및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 들어 2013년 12월 4일 현재 징계안이 27건, 자격 심사안이 2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지만 징계안의 경우 안건조정요구로 인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징계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안건도 적기에 처리를 하지 못하여 제18대 국회 막바지에 마련했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취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하고도 적시성 있는 의원 징계 심사와 자격심사를 위하여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상을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안의 경우 의안의 상정에 있어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은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의원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징계 종류를 추가 기재토록 함.

보다 자세한 법률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심사 의결 시스템이 마련되어 적기에 안건을 심사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최경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은 청원법과 달리 처리 시한 연장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청원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위원회 회부 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회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제18대 국회에서 접수된 총 272건의 청원 중 채택된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청원이 203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청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간(청원법 제9조)과 동일하게 국회법상 청원처리에 기한을 정하여 국회청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제125조 5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따라서 국회청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 개정안을 최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서울 금천구 출신 이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여 체계·자구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자구심사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나 자구

의 수정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수정까지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의 심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맡은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 의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 8년 전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였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소통을 위해 보편화된 지 20여년이 된 상황에서 이런 구시대적 판결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판결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것이 직무상 행한 발언인지 여부는 헌법해석의 문제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의 범위를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기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란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정당 또는 원내정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협의, 의사일정 작성·변경시 협의 참여, 위원회별 간사 1인 선임 등 국회 운영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거대 정당에 비해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그 결과 거대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세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 '48시간 전까지'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의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배부기간은 짧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류제출 기간은 길어 법안심사, 예산심사, 국정감사·조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이에 국회의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안건 상정 '48시간 전까지'에서 '72시간 전까지'로 늘리고 정부의 서면질

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류제출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13년 7월 22일 본 의원 외 10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요구의 범위도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 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 등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되, 서류제출은 개별의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류제출 요건 중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의 '직접관련성'을 '관련성'으로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28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처리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의결 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되므로, 국민 등 이해당사자는 국회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함께 법률안 통과시 수혜 받을 권리와 관련 준수의무를 박탈당할 수 있어 이를 재의된 날로부터 법률안 처리기한을 6개월로 규정하여 원활한 입법을 추진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각종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이 지난 1월 1일 국회의원 222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택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환부하면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에 환부하면서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재의 절차에서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및 국회법은 국회가 언제까지 재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9부2처2청의 중앙부처와 각종 정부위원회 등 20개 기관이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와 국회 및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 간의 물리적 거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전한 행정기관의 국회 방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중앙정부 부처와 국회 간 그리고 중앙정부 부처 간에 업무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공식 일정 중 88%와 86%가 여전히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고위공무원들은 국회방문을 위해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분원의 설치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용이하고, 또한 인프라 설치에 투여되는 건설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정운용 시스템의 구축에 국회가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이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전남 여수갑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원리를 기본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52조에 따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실제로 구체적인 법률안을 입안하는 절차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상 부·처 및 청이 됩니다.

한편 헌법상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등은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감사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법률에 관하여 제정, 개정 등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는 제출된 입법의견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안 제안 등에 참조하여 법률의 제·개정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 국회는 입법의견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의견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 송부하여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의견을 제출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의견의 처리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등에 대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폐회 중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

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률안 심사를 통해 본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에 의하여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려는 인사청문의 취지는 양자 모두 동일한 것임을 고려할 때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과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치는 공직후보자를 구분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의 실시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행정경제의 측면이나 인사청문의 노하우 축적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하였고, 이에 인사청문회의 담당 기관을 소관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던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제출한 선출안 등의 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내용은 제출된 법률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본 법률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회 쇄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겸직 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직의 겸직이 금지되며, 당선 전부터 겸직이 되지 않는 직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정치세력화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의원이 당선 전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의 개정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2009년 말 11,303개에서 2012년 말 14,648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2013년 8월 19일 현재 15,02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증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과도한 규제 내용 도입과 규제 수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전문가의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정부기관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의 경우 정부제출 법안과 달리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법안의 내용 역시 규제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처에서 규제심사 회피를 위해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의원입법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되는 식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법과정상의 편법 운용을 방지하고 규제 관련 법률안의 품질제고를 위해, 규제가 포함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정부제출 법률안에 준하는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은 최대한 존중하되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규제가 '재정부담,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전제되어 과학적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의 경우, 법안 발의 시에는 '규제의 내용, 필요성, 존속기한' 등의 간단한 내용이 포함된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토록 하여 법안 발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제79조의3 제1항 신설).

반면 상임위 차원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준하여 해당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뢰를 의무화하여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가 '재정부담,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의원들이 심사·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79조의3 제3항 및 제4항 신설).

금번 개정안은 과도한 단기 인기위주의 입법발의가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고, 과학적 기본자료에 입각한 법안심의가 가능케 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재정건전화와 공정경쟁 촉진, 친환경적 제도 개선, 그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회비용과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법안의 실천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률 심사를 통해 동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811)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등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활동비가 지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운영된 비상설 특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개입니다. 이들 특위의 평균 회의횟수는 3회에 그쳤고, 평균 회의시간도 1시간 39분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2년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2억 817만 원에 달했습니다.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특위 활동보고서나 결의안을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특위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국회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며, 국회 스스로 회의출석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필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비상설 특별위원

회 구성 후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라 수당 형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818)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 권한과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매 짝수 월 1일 임시회를 집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도 깊은 법안 및 예산안 심의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심의하지 못한 법안이 누적되는 등 법률의 제·개정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회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예산 및 결산 논의를 위해서도 상시국회 개회가 필수적입니다.

미국 연방하원, 영국 하원, 독일 연방하원은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없이 1년을 단위로 회기가 운영되는바, 우리 국회도 상시국회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시회의 개회 월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하원의 회기(Congressional Session)는 대개 매년 1월에 시작해 12월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영국 하원은 통상 매년 11월 국왕의 의회 개회 연설이 있고 이때부터 회기가 시작되어 다음해 11월까지 한 회기로 간주되어 1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독일 연방 하원은 상시회기이며, 한 달에 2주간 본회의를 하고 2주간은 의사일정이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시회 소집 월을 '정기회가 있는 월을 제외한 매월'로 확대하여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임시회 소집 월을 매월로 확대해 심도 깊은 법안 및 예산안을 사회 변화의 빠른 속도에 맞춰 심의하여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국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현행 국회법에 따라 서면회의록 작성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영상회의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 외부에서 이루어진 국정감사에 대하여 피감기관에서 자체 촬영한 영상물이 있는 경우, 이를 협조차원에서 제출받아 영상회의록의 형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감기관이 영상물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히 현행법상 국회의 자료요구 대상은 서류로 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을 사진이나 영상물 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을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자료요구권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 서류로 한정되어 있는 국회 자료요구 대상에 사진이나 영상물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2013년 9월 27일 저와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

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며, 국회는 입법청원 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 채택현황을 살펴보면 제18대 국회의 경우 접수된 총 272건의 청원 중 채택된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고, 제19대 국회의 경우 현재까지 접수된 청원 112건 중 채택된 청원은 단 한건밖에 되지 않는 등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혜량하시어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윤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률을 보충하는 규칙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고시도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고시에 대하여 국회가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진을 이헌승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내 각종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안건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소속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보고서 배부기한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가 소속위원들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전자적 송달 방식으로도 배부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상정일 7일 전까지, 제정·전부개정 및 폐지법률안의 경우 상정일 10일 전까지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도록 하고, 배부방식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임 위원들이 법률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00)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9대 국회 출범 후 전문지식을 소유한 의원과 보좌직원의 노력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법률안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면서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의 변경 등 실체적 개정사항이 없는 법률안을 여러 개 나누어 발의하는 등 법률안 발의 건수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어 의원입법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체적 개정사항이 없는 경미한 법률 개정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보고를 받아 위원회 제안으로 이를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발의가 단순히 실적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의 개정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개정안 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은 관행적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되는 엄중한 절차를 밟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범죄사실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에 관한 안건은 사안에 따라서 국가안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신상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으로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안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제112조제5항).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갑습니다. 김우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회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유형을 변상 및 징계조치 등으로 규정하여 결산 심사의 환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중 하나인 예산조정 요구는 법률로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이 시정요구의 유형을 좀 더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결산 시정요구의 유형에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시정요구로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의 요구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국회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법률안을 신중히 검토·심의하신 후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은희입니다.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국회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79조의2는 의원·위원회·정부가 의안을 발의·제안·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제안하는 대안이나 위원회안의 경우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상임위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법안이 대체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정소요 변동액을 반영하지 못해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당초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해 왔습니다.

실제로 18대국회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제안법안 1,029건 중 9건만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9조의2제1항), 또한 의안이 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변화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의안의 심사보고서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안 제66조제4항)하도록 하여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국가재정소요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화성을 출신 이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기관 상호간의 상호부조와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2008년 이후부터 국정감사의 필수 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사실 절차상으로 수월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실상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속적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왔고, 노란우산공제 등 정부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앙회 보조와 소상공인보조 명목으로 2013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23억 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 예산은 12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부위탁사업으로 2013년에는 정부로부터 470억 원을 지원받아 각각의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 해당 소관부처가 자체 감사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고 그 효과 또한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여 절차상 피감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국정감사를 통하여 각종 사업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것이 본 법안의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부디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십니까?

충남 천안을 출신 박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결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최고액인 10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 등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은 국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되는 증인의 경우에는 대부

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벌금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불출석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금을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익산갑 출신 이춘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은 증언자의 신분 또는 지위 여하와 관계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입법부의 권능을 훼망하지 않고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항상 진실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와 재판 중을 이유로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증언자의 증언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국정조사 등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공공의 알권리를 기망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 역시 진실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해 공공의 알 권리와 입법부의 권능을 보장하되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거부하도록 해 양자의 법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국회관계법상 국회에서 행하여진 진술 등에 대하여 위증 등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는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 또는 긴급 현안질문 등에서 국무위원 등이 거짓으로 답변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대정부질문 또는 긴급현안질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무위원 등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국회에서 행하는 발언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보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회법에 의거 의장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班)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班長)을 포함한 위원장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 선서(宣誓)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에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선서(宣誓)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법 조항의 대상범위 역시 증인·감정인은 물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셋째, 동 법의 '위증(爲證) 등의 죄(罪)' 조항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물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게도 위증(爲證)의 죄(罪)를 물을 수 있도록 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懲役)에 처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免

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민의(民意)의 전당이자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동 법률안의 취지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동대문구을 민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의 죄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신성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위증의 죄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국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가 훼손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 그 처벌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법 제4조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국가기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과 대정부 감시, 견제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에서의 각종 회의는 물론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각종 청문회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의 증언 및 서류 제출 등에 의한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무부장관들이 '국가기밀'을 원용하기 위한 상황 요건(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을 부가하여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부장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기관(예 : 국가정보원, 감사 원)이나 국무총리 소속기관(예 : 법제처, 국가보훈처)인 관서의 장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이러한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없애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국가기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의 제안내용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의 서류제출요구 규정에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제출요구가 포함됨에 따라,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법률안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국회가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적시에 충실하게 제출되고 필요한 증인 등의 국회 출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및 서류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3일 이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나. 서류제출 거부 등으로 인하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다. 현역 공무원이 증인인 경우에는 해당 증인이 재직 중인 소속 기관의 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라. 증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1항).

마. 불출석 등의 죄·국회모욕의 죄·위증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요건을 완화함(안 제15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윤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로부터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기관은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국회는 증언 받은 내용 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도 아울러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서울 도봉갑 출신 인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있어 서면증언이나 서면감정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증인선서를 거부하여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나 서면으로 된 감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안건심의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 또는 서면으로 된 감정서류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안건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공직후보자가 불리한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 최근 5년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력, 공공기관의 임원 경력 및 유치원·각급 학교 등 교육관련기관의 임원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 청문회 준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법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성(性)에 대한 올바른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의식강화 및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추문(性醜聞)사건 발생과 더불어 공직사회에서의 성범죄(性犯罪)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국가의 주요 공직을 맡게 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성(性)윤리 의식을 검증하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 자료는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기존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부터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확립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를 염두에 두시고, 본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을 출신의 민주당 심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의 검증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업무수행 능력 등 정책검증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친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 등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병역, 재산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사전검증 하도록 하고, 이에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사기간을 현행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연장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중분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 도달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에서 인사청문회 개회 10일 전까지로,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현행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서 인사청문회 개회 5일전까지로 변경하고, 답변서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인사청문회 개회를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현행 자료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여 유능한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인신공격으로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인격침해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해졌고, 짧은 인사청문기간과 공직후보자의 답변 시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윤리성 검증에 관한 제1차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실시하고, 업무능력 검증에 관한 제2차 인사청문회는 공개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명동의안 제출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증인 등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화상증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기한 내 제출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에게 공직후보자의 임명 또는 지명을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직후보자가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거짓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내용은 제출된 법률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본 법률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전 유성구 출신 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위공직자가 논문표절 및 표절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공직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에 논문표절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논문표절문제의 예방에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법률도서관은 양질의 법률장서를 기반으로 국내외 법률 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회의 법률 제·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은 현행법상 전문도서관의 하나로 분류되어 보유한 법률정보 등 도서관자료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고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회법률도서관'에 관하여는 명시적 법적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법률도서관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 주제 분야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의 개정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개정안 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전 유성구 출신 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위공직자가 논문표절 및 표절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공직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의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국민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논문표절 검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원활한 논문표

절 심사 등을 위하여 국회도서관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삼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국내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본래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초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명칭 역시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관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통일해외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된 해외 및 북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 개의 법률에 벌칙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이에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정형 편차 해소,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 등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설수용자의 진정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취지인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설수용자의 진정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최경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은희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등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직접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진정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2006년 이후 2013.9월까지 차별사건의 손해배상 권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건, 총 2억 5,100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 금액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해고, 전보, 징계 등 고용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진정인에게 2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이익 금지 규정 위배에 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21일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ICC)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을 선임하는 절차가 없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형식적인 임명권 분할만 되어 있어, 무자격한 인권위원 선임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내한했던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의 적절한 개입과 대응, 모든 시민에 대한 인권위 개방, 그리고 모든 인권옹호자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예방기구임에도 회의록 비공개 등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주요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각하 사유를 들어 외면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만큼 각하 사유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인권위 임면, 조직, 예산 및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인권위원 선임의 경우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이며 △인권위의 회의뿐 아니라 회의 결과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진정사건의 각하 사유를 축소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